##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05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:권명호·유상범·엄태영

김도읍 · 송언석 · 이만희

최춘식 · 최형두 · 강기윤

구자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·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관련 기술·서비스 등의 연구·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,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,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 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(안 제1 7조제4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전문연구기관의 지정) ①	제17조(전문연구기관의 지정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
	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
	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
	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